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의 사회적 신용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간(대주주의 경우 “5년간”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6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대주주의 경우 “5년간”을 말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다.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5.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회사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인 경우에 해당 대주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청인이 금융상품자문업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에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외국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상당하는营业을 하고 있을 것

비고

1. 법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에서의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주주에 준하는 사원(「상법」에 따른 “사원”을 말한다) 등을 대주주로 본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9조제2항 관련)

1. 기재사항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개인	법인
가. 상호	가. 신청인의 인적 사항	가. 상호
나. 본점의 소재지	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나. 본점의 소재지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마.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마. 교육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바. 업무 수행기준, 필요인력 보유 등에 관한 사항
사.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사.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

2. 첨부서류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개인	법인
<p>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p> <p>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p> <p>다.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p> <p>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p> <p>마.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p>	<p>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p> <p>다. 교육 이수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라.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서류</p> <p>마.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p> <p>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p> <p>다.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p> <p>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p> <p>마. 교육 이수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바. 업무 수행기준, 필요인력 보유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사.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서류</p>

<p>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p> <p>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자.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아.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0조제2항 관련)

1.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
- 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속한 임직원의 임명·자격요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 마.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내부통제기준의 신설·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내부통제기준 위반 예방에 관한 사항
- 아.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가 법령·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자. 임직원등의 법령·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차. 임직원등의 법령·내부통제기준 위반 사실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체계에 관한 사항

2.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1)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정책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기준
    - 가) 제2호나목에 따른 조직과 다른 조직 간의 협의 및 정보공유
    - 나) 민원, 외부전문가 의견 또는 금융소비자 의견 등의 반영

다)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2) 광고물 제작 시 준수해야할 절차·방법 및 기준

3) 광고내용(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광고내용을 포함한다)의 법령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기준 부합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방법 및 기준

4) 영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필요한 교육을 포함한다) 또는 자격요건

5) 영업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6) 임직원등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7)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8) 계약 체결 이후 그 계약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관련 임직원등 및 금융소비자에 알리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기준

9)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

나. 금융상품자문업자: 가목2)부터 8)까지의 사항. 이 경우, 가목2)의 광고물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물을 말한다.

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 가목2)부터 7)까지의 사항. 이 경우, 가목2)의 광고물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광고물을 말한다.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관한 기준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성과 보상에 관한 사항

가.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담당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나.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가 성과 보상체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4.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절차·방법 및 기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적합성 및 적정성 판단 기준(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6항 관련)

1. 적합성 판단 기준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그 합리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가. 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

- 1) 거래목적, 위험감수능력(금융상품 처분 시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또는 거래성향에 해당 금융상품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경우

나. 대출성 상품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대출사업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그 밖의 경우: 계약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금전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현재·미래 소득, 부채, 신용점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상환능력”이라 한다)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 이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만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적정성 판단 기준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그 합리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가. 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 : 제1호가목1)·2)

나. 대출성 상품 : 제1호나목2)

3. 제1호·제2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7항 관련)

	1.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3. 대출성 상품
가. 거래목적	1) 보장기간 2) 보장받고자 하는 위험의 내용 3) 기대이익 및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1) 투자기간 2) 기대이익 및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대출용도
나. 재산상황	1) 개인 가) 보유 자산 나) 연간 소득 및 부채(원리금 연체 상황도 포함한다) 2) 법인등: 회계정보		
다. 상품 취득·처분 경험 또는 그 밖의 정보	1) 과거 취득·처분한 상품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상품의 내용 나) 취득·처분의 목적 및 금액 다) 유사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및 거래빈도 2)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3) 연령 4) 위험에 대한 태도		1) 신용점수 2) 계약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3)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연령

비고

1. 고객의 거래목적을 파악하여야 하는 대출성 상품은 대출(법 제2조제1호 가목·라목에 따른 대출 또는 이 영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로 한정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출성 상품 중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

하는 경우에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연간 소득, 부채, 신용점수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획으로 한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 사유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관련)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7.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11.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법 제2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나.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다.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라. 법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15.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6.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경우
- 17.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8.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 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 19.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20.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경우
- 21.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경우
- 22.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23.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25. 법 제28조제2항에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26.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27.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재화등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8. 법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

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받은 경우

29. 법 제47조제3항에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30.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1.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2.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 :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의 동기 등

나) 위반행위의 정도 :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상황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라.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가. 법 제57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나. 법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업무정지 기간 동안 위반행위 관련 업무로부터 얻을 영업수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10,000	-
나.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1호	2,000	1,000
다.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2호	2,000	1,000
라.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	2,000	1,000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제3호		
마.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4호	2,000	1,000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7,000	3,500
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7,000	3,500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4호	7,000	3,500
자. 법 제2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5호	10,000	5,000
차.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	법 제69조 제1항 제6호	7,000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 0,000)	3,500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0)

<p>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p> <p>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3)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4) 법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p>			
<p>카.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69조 제1항 제7호</p>	<p>5,000</p>	<p>2,500</p>
<p>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p>	<p>법 제69조 제1항 제8호</p>	<p>7,000</p>	<p>3,500</p>

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5호	3,000	1,500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6호	3,000	1,500
거.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7호	2,000	1,000
너.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9호	7,000	-
더.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0호	7,000	3,500

러.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1호	7,000	-
며.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2호	10,000	5,000
버.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3항	1,000	5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3호	10,000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 2,000 만원으로 한다.